

사업주를 위한 2025년도 최저임금 관련 내용 정리

Information on the 2025 minimum wage for business owners

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체 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인상률 1.7%, 전년 대비 170원 인상)으로 결정되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넘게 되었다. 2025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2,096,27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기초자료(생계비,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효과 등) 분석 및 현장의 의견 청취,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¹⁾된다.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²⁾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글. 신향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³⁾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최저임금액의 90%)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의 합계(비교대상 임금)를 구한 뒤, ② 이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 매년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1.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 포함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 산입된다.

2.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 1)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제외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 2)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의미한다.
- 3) 단순노무업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적용 불가능하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1) 소정근로시간(일) 외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 유급휴일 등)에 대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 산입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출퇴근 차량 제공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 산입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

■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과는 관계없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1. 임금이 일(日)급인 경우 :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산정 예시

- ▶ 1일의 임금이 80,000원인 근로자로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80,000원 ÷ 소정근로 8시간 = 시간급 10,000원
→ 2024년 최저임금(9,860원) 이상 : **준수**
→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미달 : **위반**
- ▶ 1일의 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로서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 100,000원 ÷ {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1.5)} = 시간급 10,000원
→ 2024년 최저임금(9,860원) 이상 : **준수**
→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미달 : **위반**

2. 임금이 주(週)급인 경우 :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유급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산정 예시

- ▶ 1주 임금이 470,000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470,00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시간급 10,000원
→ 2024년 최저임금(9,860원) 이상 : **준수**
→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미달 : **위반**

3. 임금이 월(月)급인 경우 :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산정 예시

-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208만원의 월급을 받은 경우 : 2,080,000원 ÷ 209시간 = 9,952원
→ 2024년 최저임금(9,860원) 이상 : **준수**
→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미달 : **위반**
- ※ 209시간 :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209시간



신향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케이파워 등 삼정 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근로자복지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에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리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www.psj.kr